

대구예술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운영규정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지도 및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와 전문적인 학생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학생생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 (위치) 학생생활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개인 및 집단상담
2. 학생 지도요원의 양성 및 훈련 교육
3. 학생생활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보급
4. 심리검사
5.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지 발간 및 특별강좌 개설
6. 기타 학생생활에 관계되는 자료의 수집과 제공

제 2 장 조 직

제5조 (조직) 연구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소내에 소장, 연구위원, 상담위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 (소장) ① 연구소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구원) ①연구원 및 상담위원은 학생의 생활에 관한 연구 등 본 상담실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개발과 학생지도상담을 담당한다.

② 연구원 및 상담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8조 (조교)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9조 (위원회 설치) 연구소의 운영, 정책,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 (위원회 구성) ①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연구원과 상담위원은 위원이 된다.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제11조 (위원회 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위원 1/4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(개정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)
3.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4 장 재정

제13조 (재정)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